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179호

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438-40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-326호에 따라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20일

부산광역시장

1.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

가. 대상지

구역명	위치	권리산정 기준일	면적	사업 유형	신청 유형
(가칭)범일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	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438-40번지 일원	2026. 2. 23.	89,104㎡	재개발사업	사전타당성 검토

나. 지정사유

- 정비구역 지정 대상지 내 무분별한 토지분할,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, 공동주택 건축 등 투기를 억제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

다.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름

라.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‘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(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-326호)’에 따름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필지에만 적용 하되, 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자동 실효
- 「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변경)」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내 정비구역 지정 미신청 시,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결과는 취소되며

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자동 실효

2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(☎051-888-4231) 또는 동구 건축과((☎051-440-446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이 고시는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 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에 따른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고 있으며,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이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□ 구역 지적도

